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2007. 12월 "마포구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나. 도서관의 설치목적, 기능,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라.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마. 도서관 시설사용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내지 제13조)

바. 도서관 자료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 내지 제17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추경에 반영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 5. 14 ~ 6. 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6. 7)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두며, 명칭은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이용 및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 그 밖에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교환
6.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관업무 공무원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소장자료의 폐기·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 및 관리) ①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제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는「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변상책임) ①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대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관외대출자료 중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자료)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자료)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동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3 이내로 한다.

제19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